

인권보장면에서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박동균**, 조성제***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이 생존하는 동안 그가 가지는 기본권에 대하여 국가는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변사와 관련하여 그 생명을 다할 때,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검시제도는 실제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측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검시업무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대우로 그 피로감과 업무의 불만족이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보장면에서 현재의 검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검시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검시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법제정이나, 검시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검시관련 법령에 관해서는 검시의 주체를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에게 맡기는 독립적인 검시기관의 설립규정, 전문적인 검시전문가 등의 양성관련 규정, 검시조사관에 관한 규정, 검시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두는 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검시주체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경찰에 속한 검시관제도를 폐기하고,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의 주체로 하는 독립된 검시기관에 검시조사관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넷째, 법의의사의 부족과 인력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법의학 전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내에 법의학교실을 두는 학교를 늘리고 법의부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법의병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주제어: 검시제도, 부검, 인권, 검시관, 법의관

1. 서론

얼마 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한국사회를 뒤흔들어 사법계에 대한 불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영화에서는 증거에 대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날카로운 공방이 주요 논점이 되었다. 특히 살인사건과 같은 사망사건의 경우, 사망의 원인규명은 실제적 진실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이 연구는 2011 한국정책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일반적으로 사망의 원인은 사망자 개인이나 이와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정의와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이다. 또한 국가는 사망에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는지를 가려내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에 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인을 확인하는 검시(檢視)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채석장에서 일하던 포크레인 기사가 휴대전화의 배터리 폭발사고로 숨졌다고 보도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망자의 핸드폰은 불에 탄 흔적과 함께 찌그러져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한 사건이다. 이전부터 종종 있었던 배터리 폭발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자, 온 국민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이튿날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에 의해 동료에 의한 과실치사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검(剖檢)이란 국민의 사망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므로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구체화하는 하는 것이며, 변사체의 사인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사망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변사자에 대한 검시(檢視)는 수사의 단서로 형사입건전의 수사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검시(檢視)는 변사체를 중심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그 주변의 상황까지도 조사하는 수사행위로 검시(檢屍), 검안(檢案), 부검(剖檢)을 포함한다. 검시(檢屍)는 사망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시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검사로써 검안(檢案)과 부검(剖檢)으로 나뉜다. 검안(檢案)은 시체의 손상 없이 외부만 관찰하는 것이고, 부검(剖檢)은 검안만으로는 사인 또는 사망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어서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그 사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부검은 그 목적에 따라 병리부검, 행정부검, 사법부검으로 나뉜다. 현행 부검제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정비, 부검전문가 육성방안, 법의관 인력의 충원, 법의관의 현장검시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부검제도, 특히 사법부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부검을 포함한 검시제도와 부검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외국의 부검제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종 단행본, 관련 연구 논문 및 인터넷 자료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조사하는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활용하였다.

II. 검시제도의 기초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1. 검시제도의 역사적 의미

현대적 의미의 검시의 기원은 13세기 중엽에 이탈리아 볼로그나(Bologna)법정에서 의학 전문가 임명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고, 자살 및 타살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후검사를 시행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로부터 법의학의 학문적 기반이 조성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대륙으로 퍼지게 되었고, 1804년 비엔나(Wien)대학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법의학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다(황적준, 2003: 4)

영국에서는 검시관(Coroner)이 부검을 하였는데, 1194년 왕립순회재판기록에 소송담당자(custos placitorum)라는 명칭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12세기부터 나타난 검시관은 영국에서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에서 각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장관을 감독·독려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주 임무로 하고, 부수적 업무로 재정확보의 일환으로 변사체를 검시하여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고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자를 구금하고 재판하여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또는 벌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일을 하였다(안길수, 2009: 180). 이후 1846년에는 Coroner's Society(검시관협회)가 창립되었고, 1887년에는 '검시관 법(Coroner's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법에 의하여 검시관 역할이 왕실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죽음을 조사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근대적의미의 전담검시제도인 '검시관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황적준, 2003: 5).

이후 1926년의 개정 검시관법은 검시관의 임무를 검시(檢屍)에 제한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또는 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재소자의 사망,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검시를 요하는 상황 하에서 그 사체를 검시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검시관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법정변호사나 사무변호사 또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의사로 한다고 규정하였다(<http://www.answers.com/topic/coroner>, 2011. 4. 1. 검색일).

미국에서는 1600년 초부터 영국의 검시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검시관의 자격은 관계없이 선거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선출된 검시관은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어 검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폐해가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담당시키는 법의관(Medical Examiner)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법의관의 출발은 1860년 Maryland 주에서 성립된 사망조사에 의하여 의사를 참여케 하는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검사에서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1877년 Massachusetts주에서 법의관 제도가 시행되었고 1918년 뉴욕 주의 법의관법(Medical Examiner Law)이 병리전문의를에게 검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대적인 법의관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도종진, 2005: 119).

미국에서 주에 따라 검시관과 법의관이 공존하게 된 것은 미국이 건국초기에 영국의 검시관제도(coroner system)를 도입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영국과는 달리 검시관을 임명할 왕이 없었기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검시관은 직무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인기에 의하여 선출되는 폐단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망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기에, 변사사건을 유능한 의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범의관제도(statewide medical examiner system)가 만들어지게 되었다(하태훈, 2006: 513).

최근 미국에서는 16개주가 중앙화된 주 전체를 총괄하는 주범의관 제도(statewide medical examiner system)을 8개주는 분산화된 지역범의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의관 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주는 24개주에 이른다.

그리고 14개주는 검시관제도(coroner system)를 나머지 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두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http://bjs.ojp.usdoj.gov/content/pub/ascii/meco04.txt> 2011. 4. 4. 검색일).

2.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우리나라는 검시와 관련한 단일한 법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¹⁾, 검시와 관련되는 법령들은 형사소송법, 형법, 의료법, 경범죄처벌법, 사법경찰관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집무규칙,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서 검시의 주체가 검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검사의 검시처분 명을 받아 사법경찰관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검사가 변사사건을 직접 검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에 의한 대행검시가 대부분이다.²⁾

검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령 변사체가 발견되어 최초발견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찰출입통제선을 설치하여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 담당 사법경찰관, 과학수사계 감식형사, 검시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법경찰관은 현장과 시체주변 관련 인들을 조사하고, 과학수사계 감식형사는 현장감식을 통하여 사체관련 증거물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시관은 시체에 대한 보고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송 또는 서면으로 지방경찰청과 관할 검찰청에 보고한다. 검사는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경찰에 대행검시를 지휘하거나 직접 검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검시를 지휘한다. 이후 담당 사법경찰관은 관계인의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변사자의 시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를 검찰청에 송부하고, 검사는 검토 후 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받아 경찰서에 보낸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검증영장을 집행하여 부검의뢰서와 함께 시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다. 부검 후 15일 정도 경과하면 경찰은 부검감정서를 송부 받아 변사자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황적준,

1) 이전에 유시민 전 국회의원이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진 적은 있으나,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2) 검사의 직접검시 비율은 전체 변사사건의 13% 내외에 그치고 대부분 사법경찰관에 의한 대행 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강신욱, 2007: 46).

2003: 23-24).

3. 검시와 부검의 개념과 목적

부검(autopsy)은 “스스로 보기 위하여(to see for oneself)”라는 뜻이다. 이것에 관한 가장 최초의 기록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44년 Julius Caesar에 대해서 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임준태, 2007: 590). 부검은 의사에 의해 수천 년 전부터 이행되어 왔으며, 1247년에 중국 송나라 송자(宋慈)가 쓴 세원록(洗冤錄)은 모두 5권이며 53항목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외상의 형태와 남겨진 상처로부터 무기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익사하거나 화재로 사망한 경우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묘사하였으며, 1858년 Rudolf Virchow의 ‘세포병리(Cellular pathology)’에서 신체조직의 질병에 대하여 현미경 조사를 추가하여 현대 부검방법의 계기가 되었다(Iverson, 2001; Houck and Siegel, 2006: 171).

부검은 검시(檢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변사체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체의 손괴 없이 시행되는 시체검사행위인 검안(檢案)만으로는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을 절개·채취하는 등 시체를 손괴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검시(檢視)는 검시(檢屍)를 포함하면서 시체와 주변 현장에 대한 조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부검이란 국민의 죽음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죽음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가령, 살인은 발생하였으나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잇따르게 되면 국가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게 되며, 그에 따른 국가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죄 없는 자가 살인자가 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사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하태훈, 2006: 504).

이러한 점에서 범죄로 인한 사체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은 진범을 체포하는데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되며,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 검시 및 사범부검의 법률적 근거

현행 우리나라 사범부검과 관련한 검시의 주체로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사를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륙법계통의 영향을 받은 겸임검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³⁾ 제223조 제3항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범경찰관이 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현실

3) 독일, 덴마크, 일본과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가 된다. 모든 변사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어 검시가 시행되며,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범부검이 시행된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시관 또는 법의관을 임명하며, 이들은 변

적으로는 검사의 대부분은 검사의 서면지휘를 받아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는 제139조, 140조, 제141조 제4항, 제169조, 173조 제1항· 제2항을 들 수 있다⁴⁾. 검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부검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검에는 판사가 발부한 검증영장이 필요하다. 수사상 검증은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후영장에 의한 검증이나 영장 없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제3항, 216조 제1항 2호, 217조 제1항). 실무적으로는 검사의 지휘가 있게 되면 사체에 대한 부검을 한 후 영장을 받는 사후영장에 의한 검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감정에 의한 부검에는 법원의 허가장을 필요로 한다(박동균·최무찬, 2008: 256-263).

5.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 검시(檢視)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강신몽(1996)의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향’, 임규옥(2003)의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적준(2003)의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윤성철(2004)의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하태훈(2006)의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신욱(2007)의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허경미(2008)의 ‘현행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박동균·최무찬(2008)의 ‘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식분석과 정책적 함의’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사법부검을 포함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를 위한 검시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둘째, 수사기관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검시기관의 설치, 셋째, 검시의 주체를 법의전문의(medical examiner)로 할

사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부터 부검의 결정, 증인의 신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죽음을 처리할 수 있다.(황적준, 2003: 11).

4) 부검 관련규정 · 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④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것, 넷째, 권역별 법의감정기관을 설립할 것, 다섯째, 부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과수의 부검 업무를 독립기관을 설치하여 이관하든지 국과수를 독립기관으로 할 것, 여섯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할 것, 일곱째, 법의전문의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법의학 전공과목을 설치할 것, 여덟째, 법의병리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것, 아홉째, 검시결과에 대한 유족의 항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법률에 정할 것, 열 번째, 경찰의 현장조사와 함께 반드시 법의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법의학적 검사를 하도록 하는 현장감식·법의학자 검시현장 공동임장제를 제도화할 것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찰공의 또는 보건소 의사를 검시에 활용할 것, 열한 번째, 감식·수사경찰관에게 법의학교육을 실시할 것 등 이다.

III. 외국 검시제도의 실제

1. 영미법계 국가의 검시제도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검시제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검시관은 주로 법률가 또는 의사로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을 포함한 모든 외인사와 사인이 불상인 경우에 사망자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주변사항을 조사하는 일을 업무로 한다(박희경 외, 2007: 199).

검시관(檢屍官)은 사인을 알지 못하고 급사한 사망사건에 대한 ‘검안승인절차’(Inquest)⁵⁾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검안승인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부검을 명할 수 있으며, 검시관법에 의하여 누구에게도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죽음을 조사할 수 있다(Hodder, 2003: 153).

또한 ‘출생과 사망등록에 관한 법’에 의한 사망등록시에 사망등록 담당자로부터 법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는 사안에 대하여 사망등록에 필요한 정보 즉 사망자의 신원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조사권, 증인신문권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죽음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하고(하태훈, 2006: 512), 시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는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나 사법부검의 경험이 풍부한 내무부소속 법의병리의사(Pathologist of Home Affairs)에게 의뢰하여 부검을 실시한다(Janet Smith, 2003: 221. 황적준, 2003: 11-13).

이해관계인(Certain interests)⁶⁾에게 부검의 시간과 장소가 통지되어야 하며, 유족이 부검 절차에 참

5) 검시관이 사망사건의 관련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망인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법절차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사망사건의 약13%가 이에 해당한다.

6) 일반개업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 당해 병원, 부검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족 등이 관계인에 해당한다.

여를 원하는 경우 유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유족들이 의사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의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해 병리의사는 부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검시관은 죽음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박동균·최무찬, 2008: 256-263).

2) 미국의 검시제도

미국에서 사망사건 조사절차를 담당하는 시스템은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Maryland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aryland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검업무는 OCME⁷⁾에서 실시한다(Smith, 2003: 472-478).

사망사건의 경우 법의조사관⁸⁾이 현장에 임장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법의관⁹⁾은 사인을 증명하거나 부검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 부검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우선적으로 법의관에게 있으며, 법의관은 사건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시체를 검사하여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된다(황적준, 2003: 15).

망인의 유가족들도 부검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때 부검을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검을 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진다. 만약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검이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유족들은 판사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이성식, 2005: 93).

2. 대륙법계 국가의 검시제도

대륙법계국은 대체로 검시를 전담하는 자를 따로 두지 않고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검시의 책임을 겸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가 된다. 변사사건은 일단 수사당국에 신고되어 검시가 시행되며 범죄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로 부검이 실시된다(하태훈, 2006: 516).

1) 독일의 법정의제도

- 7) 수석법의관 중앙사무소(Office of the Chief Medical Examiner)에서는 ① 수석법의관 ② 비전임으로 근무하는 부 법의관 2명 ③ 7인의 법의관보 ④ 10인의 법의 병리의사 ⑤ 14인의 전임 조사관 ⑥ 이들의 지원하는 staff 들로 구성되어 있다.
- 8) 법의조사관(medical examiner investigator)은 수사기관이나 간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6월 내지 1년의 법의학 훈련을 거쳐 임명된다.
- 9) 미국에서 발달한 법의관(medical examiner) 제도는 변사사건의 1차 담당자를 의사인 법의관으로 정하고 법의관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는 의과대학 졸업 후 6-7년 동안 전공수련을 받은 검시전문의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 검안은 의사의 의무이고,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가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판별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방 주에서 외인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에 신고된 변사자는 인근대학의 법의학연구소의 시체 검사실로 옮겨지고 대학의 법의병리전문의 중의 한사람에 의하여 2차 검안을 시행한다.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검을 지시하게 된다.(박희경 외, 2007: 203)

부검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명하며(독일 형사소송법 87조 제4항), 2명의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데 그 중 1인은 법정외이거나 국공립법의학 연구소 또는 병리학연구소의 장 또는 연구소의 촉탁으로서 법의학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

2) 일본의 검시제도

일본의 검시제도는 검안 및 행정해부를 주로 하는 감찰의무원과 사법해부를 주로 하는 대학의 법의학교실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일본에는 대체로 각 도 또는 시에 감찰의무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찰의(監察醫)¹⁰⁾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서장, 보건소장이 사인이 불명한 시체를 발견하여 감찰의무원에 통지하였을 경우나 기타 사망사건 발생 신고가 감찰의무원에 접수된 경우, 감찰의무원(監察醫務院)에서 감찰의를 사망현장에 파견하여 사체를 검안(檢案)하여 범죄와 관련된 사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박동균·최무찬, 2008: 256-263).

범죄와 관련 있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검찰의는 검찰관의 부검결정에 조언할 수는 있으나 종국적인 부검 결정권은 검찰관(檢察官)에게 있다(문국진·우에노마사히코, 2003: 124).

1959년 9월부터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본부에 형사조사관 (또는 검시관리관)을 배치하여 변사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 의사의 검안에 입회하며, (사법)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윤성철, 2004: 59).

한편, 변사체 혹은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검시가 없으면 감찰의가 검안 또는 부검할 수 없고 감찰의의 부검은 형사소송법상의 검증, 감정을 위한 부검업무를 방해하지 못한다(시체해부보존법, §8①).

사법부검 대상인 사체는 감찰의무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대 ‘법의학교실’로 송부되어 이곳에서 의과대학 법의학교수가 부검한다(문국진·우에노마사히코, 2003: 117).

IV.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검시주체의 비전문성

10)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주로 행정부검을 담당한다.

검사의 주체인 검사와 변사사건의 대부분을 실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대행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법의학적 지식이나 경험, 검사의 목적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기는 힘들다. 또한 실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사체를 검안하는 검안의도 일반의가 대부분이므로 검사의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상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¹¹⁾가 검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종속되어 있기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범죄수법의 지능화와 함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 조사 및 사망 종류에 대한 법의학적 해석과 판단은 사건 현장의 정황과 현장에서 얻어진 정보에 근거할 때만 과학적 타당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검사의 객관성과 무오류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검사의 객관성과 무오류성은 검시주체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에 의하여 담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를 검사의 주체로 하고 현장에서부터 검시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¹²⁾이 검사의 객관성과 무오류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충분한 검시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의 개정도 용이한 일이 아니며, 더욱이 충분한 검시전문가의 양성은 검시전문가의 보수문제 등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¹³⁾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검시전문가의 양성을 통하여 검시주체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시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법 제정이나, 검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의 법의조사관¹⁴⁾에 해당하는 검시조사관을 두고, 독립된 검시기관에 소속시키는 방안을

11) 미국의 경우로 말하면 법의관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12) 법의관이 사건 현장에 출두해 초동대응을 할 수 있다면 부검의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어 예산이 절약되며, 현재 장기기식을 위해 장기를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8조원에 달하는데 법의관이 현장에서 부검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기증을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본다 (서중석, 아시아투데이, 2010. 5. 26일자).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사 '법의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총 35명에 불과하다. 미국이 2,000명 정도의 법의관을 보유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서중석, 아시아투데이, 2010. 5. 26일자)

14) 사법경찰관의 검시전문성의 부족과 현장의 검시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에서는 검시전문가로 검시관을 2005. 11. 31.부터 선발하였으나 변사사건에서 감식형사와 같은 보조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안길수, 2009: 199). 법의조사관은 수사능력을 가진 수사관에게 일정 기간 집중적인 의학 및 법의학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수사 및 조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양성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20만 명당 1명의 법의관 혹은 법의조사관을 두고 국민의 죽음을 감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약 200명의 법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검시관련 법령의 미비

현재 검시의 주체에 관한 규정, 검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으나, 검시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시관련 법령에 관해서는 검시의 주체를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에게 맡기는 독립적인 검시기관의 설립규정, 전문적인 검시전문가 등의 양성 관련 규정, 검시조사관에 관한 규정, 검시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두는 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은 검시대상을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망의 종류에 대한 법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윤호중 의원이 2005. 4. 19.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조 제1항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대상과 범위를 ①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②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그 밖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시설에 수용된 자가 사망한 경우, ③약물, 가스 또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④그밖에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적이 있으나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검사 등 검시기관이 자의적으로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검시가 누락되고 범죄가 은폐될 위험이 있기에, 각종 의혹의 소지가 있는 일정한 유형의 죽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반드시 신고되어지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신욱, 2007: 62-63). 검시와 관련한 통일법전의 제정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여론의 수렴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과제로 생각될 수 있으나, 변사자에 대한 검시대상과 범위에 관한 규정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통하여 시급히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3. 현행 검시관 제도의 비효율성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법경찰관이 검안의사의 도움을 받아 검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기존 검시에 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일부 제기되고, 경찰 내부적으로 검시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자료로 사인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검시관’ 제도를 도입¹⁵⁾하여 2007년까지 57명을 선발하여 2009년에는 51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검시관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배치되어 있다(안길수, 2009: 191).

검시관 운영지침 제3조에서는 검시관을 ‘경찰청 소속기관의 과학수사기능에 배치된 변사체 감식 전

의학전문 의사, 약 400명의 검시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국립수사연구원 자료실, 2011. 4. 3. 검색일).

15) 의학·간호학·임상병리학·생물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 중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 있다. 현재 검시관 중에 의학전공자는 없다.

문 검시요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검시관의 업무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는 현장에 사법경찰관과 함께 임장하여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시관은 사법경찰관과 현장으로 같이 임장하여 변사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과학수사계 소속 감식형사가 하는 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방법 또는 수사체계의 변화를 준 사항은 없으나 의학적 지식을 가진 검시관의 업무협조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등 수사관련 법규의 근거에 의해 활동하지만, 검시관은 일반공무원이며, 변사사건의 검시활동에 대한 법률의 근거도 없다(안길수, 2009: 194).

의사가 아닌 검시관의 사체에 대한 보고서는 의사의 검안서와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별도로 의사의 검안서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 인원도 매우 적어서 일부 지역에서만 검시를 하고 있다. 경찰의 입장에서 검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경찰의 변사사건 주체를 사법경찰관이 책임 수사하는 것에서 검시관이 수사주체로서 사건의 책임자가 되어 사건을 진행한다면 현장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반 사항 즉 죽음에 대한 규명, 검안·부검의와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고 전문가로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안길수, 2009: 205). 이는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검시관을 경찰단계에서 변사사건의 책임자로 두는 것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시주체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경찰에 속한 검시관제도를 폐기하고,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의 주체로 하는 독립된 검시기관에 검시조사관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4. 법의의사의 부족과 인력확보 방안의 미비

우리나라에서 법의의사가 되려면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 5년의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로서 검시실무 현장에서 최소 1-2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만 하는 등 장기간의 교육과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감염된 시체 부검시 감염 위험과 사인규명 및 책임소재 분석, 법률적 분쟁과 관련한 사실조회 및 질의 관련 답변서 작성 등의 열악한 업무실정과 함께 다른 전문의와 비교했을 때, 처우수준이 열악해 법의학 전공 지원자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검은 국립기관인 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본소는 서울과 경기지방, 부산에 있는 남부분소는 경상지방, 광주 인근의 장성에 위치한 서부분소에서는 전라 및 제주 지방, 대전에 있는 중부분소는 충청지방, 원주 인근의 문막에 위치한 동부분소는 강원지방과 경기 및 경북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국과수가 전국의 모든 변사사건에 대한 사법부검을 수행하기에는 분소의 수가 너무 적고, 법의관의

인력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과수이외의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과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첫 번째, 국과수의 촉탁의사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과수의 본소와 분소는 의과대학의 법의학, 병리학 또는 해부학 교수를 국과수로 초빙하여 부검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역법의학관 사무소로 국과수가 대학에 법의관과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일정지역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형태가 있다. 서울지방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법의학관사무소가 그 예이다. 여기에는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외부 대학의 교수도 촉탁의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과수는 대학에 소정의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셋째, 국과수의 지역법의학관사무소이지만 국과수가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설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일정지역의 법의부검을 대학 측에 일임하는 형태이다.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여기에 속하며 해당 대학의 법의학교수들만 참여하고 있다. 넷째, 국과수의 남부분소와 같이 법의학과와 기능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와 같은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형태다. 다섯째, 경북대학교나 제주대학교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국과수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여섯째, 일부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사건을 산발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는 국과수나 대학과 연관 없이 그 지역의 개원의사와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이다(강신몽, 2009. 1. 27.일자)

부검과 관련하여 국과수의 법의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일정한 봉급을 받고 있고, 그 이외의 부검에 있어서는 한건 당 25만원의 부검료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대우는 법의학 전문가의 양성을 힘들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의학 전공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해부병리 전문의 자격을 취득 한 자들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검서관련 기관에서 1-2년간 검시·부검업무를 수행하면 관례적으로 법의학 전공의사로 인정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법의학 전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내에 법의학교실을 두는 학교를 늘리고 법의부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법의병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황적준, 2003: 42)

그리고 국과수의 지역 분소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 거점대학병원의 법의학교실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법의학교실내에 사법부검이 가능하게 되어 법의학 전공의사를 양성할 수 있고, 검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국가는 이러한 법의학교실이 각 대학병원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각종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이 생존하는 동안 그가 가지는 기본권에 대하여 국가는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변사와 관련하여 그 생명을 다할 때,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검시제도는 실제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측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검시업무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대우로 그 피로감과 업무의 불만족이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검시제도를 고찰하여 얻게 된 시사점을 가지고, 현재의 검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검시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검시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법제정이나, 검시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검시 전문가를 현장에 참여시킬 정도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실정을 살펴보면, 검시전문 양성제도의 미비, 그에 상응하는 보수 및 사회적 대우를 위한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힘든 것이 현실이기에 미국의 법의조사관에 해당하는 검시조사관을 두고, 독립된 검시기관에 소속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시관련 법령에 관해서는 검시의 주체를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에게 맡기는 독립적인 검시기관의 설립규정, 전문적인 검시전문가 등의 양성관련 규정, 검시조사관에 관한 규정, 검시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두는 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여론의 수렴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변사자에 대한 검시대상과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사 등 검시기관이 자의적으로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검시가 누락되고 범죄가 은폐될 위험이 있기에,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통하여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다.

셋째, 경찰청이 2005년부터 도입한 검시관은 사법경찰관과 현장으로 같이 임장하여 변사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과학수사계 소속 감식형사가 하는 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검시주체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경찰에 속한 검시관제도를 폐기하고,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의 주체로 하는 독립된 검시기관에 검시조사관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넷째, 법의의사의 부족과 인력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법의학 전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내에 법의학교실을 두는 학교를 늘리고 법의부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법의병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국과수의 지역 분소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 보다는 지역 거점대학병원의 법의학교실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법의학교실내에 사법부검이 가능하게 되어 법의학 전공의사를 양성할 수 있고, 검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장점도 있다.

참고문헌

- 강신몽. 2003. 미국의 검시제도. 수사연구. 21(4): 103-104.
- 강신몽. 2005.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수사연구. 23(8): 44-46.
- 강신욱. 2007.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정식·채종민·최영석·한길로·이승덕·최상한. 2002.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법의학회. 5-62.
- 곽순기. 2004.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 1981. 1991 변사체처리 지침. 3. 대검예규 제 136호, 1981.7.1.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판결.
- 대한민국정부. 2005. 200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 문국진·우에노 마사히코. 2003.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도서출판 해바라기.
- 박동균·최무찬. 2008. 사범부검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식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8(12): 256-263.
- 박희경·채종민·이상한·곽정식. 2007. 검시제도의 비교고찰. 경찰학논총. 2(1): 203-206.
- 이성식. 2005.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상. 2001.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 임규욱. 2003.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준태. 2007. 법과학과 범죄수사. 광주: 21세기사.
- 윤성철. 2004.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철. 2005.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6(1): 107-152.
- 하태훈. 2006.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18(2): 512-516.
- 황적준. 2003.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연구소.
- Ramsland Katherin. 2001. *The Forensic Science of CSI*. New York: Berkley Boulevard Books.
- Houck, Max and Siegel, Jay A.. 2006. *Fundamentals of Forensic Science*. Amsterdam. Baton: Elsevier/Academic Press.
- Iverson, K. 2001. *Death to dust: What happens to Dead Bodies?* 2nd ed. Tucson, AZ Galen Press, Ltd.
- Hodder Elizabeth, et. al., 2003. *Death Certification and Investigation in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Report of Fundamental Review.
- Smith Janet. 2003. *Death Certific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Death by Coroners*. The Shipman Inquiry. Third Report. 2003. 7. 14.

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1996. 2), 현재는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경찰행정, 위기관리, 민간경비 분야이며,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한국테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음주운전의 유발요인과 함의, 2011”, “미국 재해구호 활동과 시스템 : 특징과 시사점, 2011” 등이 있고, 저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론(공저, 2009), 태안은 살아 있다(공저, 2010), 경찰학개론(2011, 공저) 등이 있다(police@dhu.ac.kr).

趙成濟: 경북대학교에서 ‘수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원리의 구체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 경찰학회 이사, 한국치안행정학회 총무위원장, 국가위기관리학회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2008)’,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2009)’,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010)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에 관한 고찰(2011)’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로는 테러방지법, 위기관리법제, 인권법 등이 있다(csj127@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07월 04일

수 정 일: 2012년 07월 22일

게재확정일: 2012년 07월 29일

Improvement of the Current Inquest System in Terms of Human Rights

Dong Kyun Park, Seong Jae Cho

Our country's autopsy system has a great problem about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in the aspect of substantially discovering truth and guaranteeing human rights. Even in the position of workers for autoptic duty, its fatigue and dissatisfaction with task already reached a critical situation due to poor environment and treatment. With the implication that came to be obtained by considering autopsy of each country here, the aim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as follows for the current autopsy system. First, with regards to the main agent of autopsy, to guarantee its objectivity in light of importance of autopsy system, it is desirable to leave it to the independently separate institution through enacting the single law for securing independence or enacting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prescribed the main agent of autopsy as public prosecutor. Second, as for a law pertinent to autopsy, enacting new law is thought to be the best plan such as having the regulation of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autoptic institution, which leaves the autoptic agent to death investigation specialist(forensic expert), the regulation related to training professional autopsy specialist, the regulation pertinent to autoptic investigator, and the specific regulation on a subject of autopsy. Third, a medical examiner, which was introduced from 2005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vestigates into a body by going to the field together with a judicial police officer and does the task of preparing its result report, but is in the real situation of performing by dividing the task, which is conventionally performed by identification detective of belonging to forensic science. To discover substantial truth and guarantee human rights through securing independence and guaranteeing professionalism in the main agent of autopsy in the long term, it is a desirable plan to scrap the coroner system of belonging to the police and to have the autoptic investigator system in the independent autopsy agency of having death investigation specialist(forensic expert) as the main agent of autopsy. Fourth, to continuously train a doctor of majoring in forensic medicine in relation to a plan for the lack of forensic medicine doctor and for securing manpower, a plan of adopting forensic pathology specialist system is needed by increasing a school of having classroom of forensic medicine within the college of medicine and allowing autopsy of forensic medicine to be possible.

Key words: autopsy, coroner, medical examiner, human rights, forensic expert